

##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

소관부서 : 기업지원과

제정 2020· 6· 30 조례 제1612호

**제1조(「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근로자단체”를 “노동자단체”로 한다.

**제2조(「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3조(「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근로자단체”를 “노동자단체”로 한다.

**제4조(「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, 제2조제1항, 제3조,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별표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5조(「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6조(「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노동단체

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

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7조(「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하고, “근로조건”을 “노동조건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1항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8조(「이천시 생활임금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생활임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 및 제8조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9조(「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소득”을 “노동소득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“근로시간”을 “노동시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3호가목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10조(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11조(「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제31조제1항 중 “근로시간”을 “노동시간”로 한다.

**제12조(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,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제8호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13조(「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14조(「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“근로를”을 “노동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, 제3호 및 제4호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, 제8조제1항, 제2항, 제8조의2제1항, 제2항,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, 별지 제4의2호 서식 및 별지 제4의3호 서식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 중 “근로”를 “노동”으로 한다.

**제15조(「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**

「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근로하는 상시근로자”를 “노동하는 상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16조(「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6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“근로조건”을 “노동조건”으로 한다.

**제17조(「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**제18조(「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근로”를 “노동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“근로가”를 “노동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,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근로”를 각각 “노동”으로 한다.

**제19조(「이천시 택시사업 발전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택시사업 발전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근로”를 “노동”으로 한다.

**제20조(「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「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호 중 “근로”를 “노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